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497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곤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1. 2. 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21563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54,285,7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44059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0. ‘D는 원고에게 28,26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경 다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7508호로 위 판결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8. 위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28,261,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이 있다. 한편 D의 어머니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4. 7. 1. 사망하자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는 2014. 8. 29.경 공동상속인인 H, 피고와 사이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그 무렵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7. 7. 위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0594)을 받아 2016. 7. 11.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무렵인 2016. 7. 7.경에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9.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석수, 판사 오영두, 판사 류승우

[별지]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6층 호 84.87㎡

대지권의 표시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 19697.9㎡

대지권의 종류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96979000분의 334991 -끝-